

## 사망보험계약의 판매에 관한 검토

### A Review on the Sale of Death Insurance Policy

이 정 원\*

Jung-won Lee

우리의 경우 사망보험계약 판매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된 논거로는 사망보험계약 판매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위험 내지 윤리적 문제와 함께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 증가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망보험계약 판매제도는 계약당사자의 공박 등의 악용 내지 사기의 문제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내지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반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령층의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와 유사하게, 사망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채무에 대해 정부 내지 공공기관이 이들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는 방식의 사망보험계약 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국문 색인어:** 생명보험계약의 판매,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계약의 이전, 보험수익자의 변경,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 사망보험금 선지급특약, 생명보험계약 연금제도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130323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703hee@pusan.ac.kr), 제1저자  
논문 투고일: 2022. 10. 21, 논문 최종 수정일: 2022. 12. 30, 논문 게재 확정일: 2023. 5. 19

## I. 서론

필자는 영어공부의 목적에 더해서 국제정세의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 유력 방송매체를 자주 청취하고 있다. 필자가 애청하는 주요 방송매체는 민간 방송인 관계로 프로그램의 중간에 각종 상업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방송을 듣던 중 유독 필자의 귀를 집중하게 만든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생명보험계약의 전매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은퇴 후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노령층의 생계자금의 충당 내지 빈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듯하다. 앞서 언급한 방송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면, “이제 자녀들도 모두 다 성장했으므로, 당신이 자녀들의 생계보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 계속해서 유지할 여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 생명보험계약을 왜 계속 보유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을 저희에게 매도하시고, 여생을 여유롭게 생활하십시오.”라고 권유하고 있다.

위 광고의 내용은 우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의 전매(轉賣)제도’라고 부르고 있는 미국의 ‘Life settlement’ 또는 ‘Senior settlement’에 관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법상 ‘Life settlement’ 등은 불치병 등에 걸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의 치료비 등의 필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환자가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을 타인에게 보험금액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매도하는 제도인 ‘Viatical settlement’에서 기원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Viatical settlement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결여된 미국의 특유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 과거 불치병으로 간주되던 AIDS 등의 질환이 의료의 발달에 따라 만성질환화 되는 등 사정의 변화에 따라, 과거 말기 불치병환자의 치료비 등의 필요경비의 확보 목적으로 발달한 Viatical settlement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대신 노령층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생활자금의 확보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 Life settlement가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은퇴 등으로 인해 노인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1) 김문재(2008), pp. 193-195.

아니다.<sup>2)</sup> 이에 따라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개별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모의 봉양에 사용함으로써 인해 자녀세대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를 안고 있다. 다행히 2022년 들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통계상으로 소폭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부가 2014년에 도입한 기초연금제도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sup>3)</sup> 그러나 막대한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기초연금의 확대를 통한 노인 빈곤 문제의 해소는 지속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세대 간·계층 간 합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가 2021년 전국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63.7%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sup>4)</sup> 경제적 이유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어렵거나 보험기간 중 목돈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비율이 4.8%를 기록하고 있고,<sup>5)</sup> 이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6)</sup> 나아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는 동기는 가입자에 따라 다양할 것이지만,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의 유족의 경제적 생활보장 내지 상속세 재원확보 등의 '상속동기(Bequest motive)'가 주요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된다.<sup>7)</sup> 그러나 앞서 본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 가입목적으로는 향후 '의료비 보장'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의 생활보장(44.3%)', '일시적 소득상실 대비(17.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가구주(家口主)의 연령이 '29세 이하' 인 표본집단에서 의료비 보장이 90.6%, 노후생활보장이 16.4%로 타 집단 대비 가장 높게

2) 연합뉴스(2022. 3. 8), “노인빈곤율 38.9%로 하락…첫 30%대 기록은 ‘기초연금 효과’”,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2030709840050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과거 계속해서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2019년 기준, 13.5%)의 거의 3배 정도의 수치로서,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통계청 ‘한 눈에 알아보는 나라지표(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024&board\\_cd=INDX\\_001](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024&board_cd=INDX_001)) 참조, 2022. 7. 29. 최종검색.

3) 김안나(2021), p. 272.

4) 생명보험협회(2021), p. 22.

5) 생명보험협회(2021), p. 92.

6) 홍지민(2019), p. 54.

7) 홍지민(2019), p. 2.

나타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보험계약 체결목적이 사후 유족의 생활보장 등의 상속목적에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생존 시의 의료비보장 내지 생활보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는 자신이 보유한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행 법제상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는 애당초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의 달성에 거의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은퇴 이후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인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인인구의 경제적 곤란의 해소 차원에서 최근에는 Life settlement가 주목을 받고 있다.<sup>9)</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보험계약자의 생전의 의료비 보장 등의 수요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녀 등에 대한 경제적 보장 등의 필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굳이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유지할 필요 없이 생전에 약정된 생명보험금을 유동화하여 그 대금을 보험계약자의 생활자금 등의 수요에 충당하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후자금의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들의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하, ‘주택금융공사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여 노령층의 노후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령 인구가 보유한 생명보험계약의 전매를 통한 생활보장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약 10여 년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2009년경에는 의원입법의 형태로 상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이의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sup>10)</sup> 그러나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에 대해서는

8) 생명보험협회(2021), p. 41.

9) 홍지민(2019), p. 16에 따르면, 2015년 초부터 실시된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에 대한 TV 광고,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면서 전매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한다.

도입 자체에 관한 찬성과 반대 견해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법제상 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하에서는 우리 법제에서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후 해석론과 입법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만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에 관해서는, 기왕의 탁월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에 필요한 한도에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우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약정된 시기까지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계약’ 및 양자의 혼합형 계약이 존재하지만,<sup>11)</sup> 이 글의 논의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제도에 한정하고자 하므로, 이하에서는 용어를 ‘사망보험계약’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 II.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의의

#### 가. 미국의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연혁과 입법적 논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는 미국법상 ‘Viatical settlement’ 또는 ‘Life settle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망보험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제도적 기원은 Grigsby v. Russell 사건<sup>12)</sup>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재산권성(Private property)을 인정함으로써 사망보험계약 매매의 합법성을 인정하였고 이후 다

10) 박선숙 의원이 2009. 12. 31. 대표 발의한 의안 제1807081호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법 제734조의2를 신설하여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11) 박세민(2021), pp. 943-945.

12) 222 U.S. 149 (1911).

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계약도 타인에게 매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3)</sup>

그러나 미국에서 Viatical settlement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경,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인식되던 AIDS를 비롯한 시한부 중증질환자에 대한 생전의 고액의 의료비용과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환자가 보유한 사망보험계약을 타인에게 매도하도록 허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sup>14)</sup>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불치병으로 인식되던 AIDS 등의 중증질환이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인식되면서, 말기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던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초점은 자녀의 성장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망보험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거나 노후 여유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이 보유한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인 Life settlement로 이전하게 되었다.<sup>15)</sup> 특히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사망률 측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Viatical settlement와 달리,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Life settlement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률 예측의 정확도를 개선시킨 보험계리적 모형의 발달에 따라 투자수익률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 미국의 사망보험계약 전매시장은 Life settlement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6)</sup>

한편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활성화에는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간과할 수 없는데, 연방정부는 1996년경 「건강보험관리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을 제정하여 시한부 중증질환자의 사망보험계약 전매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sup>17)</sup> 또한 '全美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라고 함)'<sup>18)</sup>는 1993년경 「Viatical Settlements Model

13) 홍지민(2019), p. 5; 김이수(2012), pp. 604-605.

14) 홍지민(2019), p. 5.

15) 홍지민(2019), p. 5.

16) 홍지민(2019), pp. 5-6.

17) 권영수·이형철(2006), p. 15에 따르면, 치명적 질병에 걸리거나 잔여수명 24개월 이하의 진단을 받은 자 또는 특정 만성질환자가 Viatical Settlement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하며, 잔여수명이 12개월 이하로서 선지급특약에 따라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18) NAIC가 설립되기 전에도 각 주별로 보험감독청이 있었으나,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을 총괄하고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대두되어, 1871년 보험자의 재무건전성 확보, 차별방지 및 건전한 보험관행 유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확립하

Act」를, 1994년경에는 「Viatical Settlements Model Regulation」을, 그리고 ‘전미보험 입법자회의(National Council of Insurance Legislators, 이하, ‘NCOIL’이라 함)<sup>19)</sup>는 2000년경 「Life Settlements Model Act」를 제정하여, 각 주로 하여금 사망보험계약 전매에 관한 입법에 있어 위 모델법 등을 참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각 주정부도 위 모델법과 모델규칙을 참조하여 보험감독법규에서 사망보험계약의 매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sup>20)</sup>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Interstate Insurance Product Regulation Commission, 이하, ‘IIPRC’라고 함)<sup>21)</sup>도 사망보험계약의 매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22)</sup>

### 나.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의의와 유형

Life Settlement Model Act 제2조 L항은 Life settlement contract를 유상으로 사망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행위뿐 아니라 사망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루어진 금전의 차입행위, 사망보험계약을 신탁하고 취득한 신탁수익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3)</sup> Viatical Settlement Model Act 제2조 N항도

기 위해 각 주의 보험감독관이 자발적으로 모여 발족한 기관이다. NAIC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NAIC(<https://content.naic.org/about>)를 참고하기 바람.

- 19) NCOIL은 1969년에 보험·금융에 관한 각 주 의회 의원들의 입법지원, 교육, 보험 관련 각 주의 입법과 정책의 조율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각 주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기구(A legislative organization)이다. 한편 NCOIL은 보험 관련 입법활동을 위해 연방 하원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NCOIL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NCOIL (<https://ncoil.org/history-purpose>)를 참조하기 바람.
- 20) NAIC에 따르면, 2022. 7. 현재 43개의 주가 모델법을 참고하여 Viatical settlements에 관한 실정법규를 두고 있다. Viatical Settlements Model Act, ST-697, (<https://content.naic.org/sites/default/files/ST697.pdf>) 참조. 2022. 8. 1. 최종검색.
- 21) IIPRC는 2002년경 각 주의 보험상품 개발과 규제의 현대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NAIC에 의해 채택된 ‘주간협약체(An interstate compact)’에 기원을 두고 있다. 위 주간협약체는 2006년 5월경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는 표준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관련 절차의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INTERSTATE INSURANCE PRODUCT REGULATION COMPACT」 제4조(Power of the Commission)를 참조하기 바람.
- 22) 2007. 2. 28. 채택된 「INDIVIDUAL LIFE INSURANCE APPLICATION STANDARDS」 중 AGREEMENT TO SELL OR ASSIGN POLICY FOR WHICH APPLICATION IS BEING MADE (2)에 따르면, 보험자가 사망보험계약 청약서식에 피보험자 등의 사망보험계약의 매매에 관한 질의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Viatical settlement contract에 관해 Life Settlement Model Act 제2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Viatical settlement contract란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 자로부터 사망보험금을 하회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합의를 의미한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주된 담보로 하여 이루어진 대출계약 역시 Viatical settlement contract에 포함되며, 대가를 선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거나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4)</sup>

### 23) LIFE SETTLEMENTS MODEL ACT

#### Section 2. Definitions

L. 'Life Settlement Contract' means a written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a Provider and an Owner, establishing the terms under which compensation or any thing of value will be paid, which compensation or thing of value is less than the expected death benefit of th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return for the owner's assignment, transfer, sale, devise or bequest of the death benefit or any portion of an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of insurance for compensa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 minimum value for a Life Settlement Contract shall be greater than a cash surrender value or accelerated death benefit available at the time of an application for a Life Settlement Contract. "Life Settlement Contract" also includes the transfer for compensation or value of ownership or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or other entity that owns such policy if the trust or other entity was formed or availed of for the principal purpose of acquiring one or more life insurance contracts, which life insurance contract insures the life of a person residing in this State.

1. 'Life Settlement Contract' also includes

- (a) a written agreement for a loan or other lending transaction, secured primarily by an individual or group life insurance policy; or
- (b) a premium finance loan made for a policy on or before the date of issuance of the policy where:
  - (i.) The loan proceeds are not used solely to pay premiums for the policy and any costs or expenses incurred by the lender or the borrower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ng; or
  - (ii.) The Owner receives on the date of the premium finance loan a guarantee of the future life settlement value of the policy; or
  - (iii.) The Owner agrees on the date of the premium finance loan to sell the policy or any portion of its death benefit on any date following the issuance of the policy.

### 24) VIATICAL SETTLEMENTS MODEL ACT

#### Section 2. Definitions

N. (1) "Viatical settlement contract" means a written agreement between a



Viatical settlement와 Life settlement에 관한 위와 같은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법상 위 계약들을 단순히 사망보험계약의 전매 또는 매매라고 칭하고 있지만, 미국법상으로는 단순한 사망보험계약의 매매만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당사자의 지위 내지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처분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소위 ‘The Retained Death Benefit option’이 추가적으로 도입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은 자신이 보유한 사망보험계약 전부를 전매할 필요 없이, 당장의 경제적 수요에 대응할 정도의 보험금청구권의 지분만 처분하고 나머지 보험금청구권은 자신이 계속해서 보유할 수도 있다.<sup>25)</sup>

한편 미국의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유형으로는,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사망보험계약을 매수한 자(Provider)가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한 후,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사망보험금을 수취하는 방식(소위 ‘단순전매형’), ② 사망보험계약의 매수인이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소위 ‘완전전매형’),<sup>26)</sup> 그리고 ③ 사망보험계약의 매수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매수한 보험계약을 바탕으로 자산 풀(Pool)을 구성하여 신탁업자에 신탁한 후, 신탁업자

viator and a viatical settlement provider or any affiliate of the viatical settlement provider establishing the terms under which compensation or anything of value is or will be paid, which compensation or value is less than the expected death benefits of the policy, in return for the viator's present or future assignment, transfer, sale, devise or bequest of the death benefit or ownership of any portion of th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of insurance.

(2) “Viatical settlement contract” includes a premium finance loan made for a life insurance policy by a lender to viator on, before or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policy where:

- (a) The viator or the insured receives on the date of the premium finance loan a guarantee of a future viatical settlement value of the policy; or
- (b) The viator or the insured agrees on the date of the premium finance loan to sell the policy or any portion of its death benefit on any date following the issuance of the policy.

25) Stephen Terrell(2014).

26) 김문재(2008), p. 202에 따르면, 이 방식의 전매제도에는 생명보험계약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계약을 재판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곧바로 회수하는 방식과, 매수인이 매입한 보험계약을 복수의 투자자에게 지분형태로 재판매한 후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투자금을 소액화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소위 ‘신탁이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7)</sup> 다만 미국의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국내 다수의 견해이긴 하지만, 어느 방식이든 보험계약자와 매수인 사이의 보험계약의 매매를 바탕으로 후속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의 매매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계약의 매매에는 중개인(Broker), 보험계약 매수인(Provider), 투자자, 인수회사(Underwriter), 보전사무관리회사<sup>28)</sup> 등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 매매의 수익률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과 실제여명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sup>29)</sup> 보험계약의 매매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의 확보가 요구되고, 말기중환자 등의 곤궁한 사정을 이용한 계약체결이나 사기거래 등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sup>30)</sup> 이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격권 보호 문제, 사기 및 궁박을 이용한 계약체결의 방지, 투자자 등의 보호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고, 앞서 살펴본 Life Settlement Model Act 등의 법규의 제정도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법적 성질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보험계약법 등 기존 법제를 참고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일부 유력한 견해는 보험계약의 양도로 해석하는 것 같다.<sup>31)</sup> Viatical settlement 내지 Life settlement의 경우 사망보험계약의 매수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면서 잔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매도인은 장래 보험료납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계약의 핵심 요소이므로,<sup>32)</sup>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27) 미국의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유형에 대해서는, 김문재(2008), p. 201 이하를 참고하였다.

28) 보전사무관리회사는 피보험자의 생존확인, 사망보험금 청구, 보험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보험계약 매수인 또는 인수회사에서 겸영한다고 한다.

29) 김이수(2012), p. 609; 조성일(2018), p. 285.

30) 홍지민(2019), pp. 13-15.

31) 김문재(2008), p. 203; 김선정(2008), p. 273.

32) Life Insurance Settlement Association(2020).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법적 성질은 보험계약상 지위의 이전과 함께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내지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3)</sup>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에 관한 직접적인 실정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인수, 계약가입은 민법상 명문규정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sup>34)</sup> 통설적 견해도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를 인정하고 있다.<sup>35)</sup> 다만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관한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계약당사자의 변경은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래의 계약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계약인수가 본래의 계약당사자 및 양수인 사이의 3면 계약이 아닌, 본래 계약당사자 중 일방과 양수인이 인수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타방 계약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구하고 있다.<sup>36)</sup>

나아가 상법 제731조 제2항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보험 계약으로 인한 권리’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sup>37)</sup> 따라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법적 성질을 보험계약상 지위의 이전과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망보험계약의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인수의 요건 및 상법 제731조 등에서 규정하는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33) 장덕조(2014), p. 132.

3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534 판결 등.

35) 박윤직 대표편집(1992b), pp. 626-627.

36) 박윤직 대표편집(1992b), pp. 627-628;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534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734 판결.

37) 박세민(2021), p. 971.

### Ⅲ.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국내 논의와 분석

#### 1.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에 관한 국내 논의의 개요

미국의 경우, 일찍이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재산권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Grigsby v. Russell 사건<sup>38)</sup>의 영향으로 인해 Viatical settlement나 Life settlement의 도입에 있어 사회적 파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sup>39)</sup>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사망보험계약 전매에 관한 명문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다양한 근거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에 대해서는 ① 피보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투기 내지 도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②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전제가 되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접근 허용에 따른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③ 피보험자의 경제적 곤궁 등을 이용한 부당한 계약체결의 가능성이 있고, ④ 보험계약자 또는 매수인 등 거래 관련자에 의한 사기의 발생가능성, ⑤ 사람의 목숨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up>40)</sup>

사망보험계약 전매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적 견해들은 일견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비판적 견해들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본다.

#### 2.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검토

##### 가.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비윤리성 내지 반사회성의 문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의 발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계약의 매수인 등의 이익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거나, 피보험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도박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

38) 222 U.S. 149.

39) 김문재(2008), p. 194.

40) 김이수(2012), pp. 608-609; 김문재(2008), pp. 226-229; 장덕조(2014), p. 141.

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sup>41)</sup>

이는 본질적으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설적 견해는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관념을 뜻하고,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공공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달리 말하면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sup>42)</sup> 다만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개개의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구체화 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sup>43)</sup>

그렇다면 과연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비윤리적이라거나 반사회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된 근거는 인간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매개로 타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다는 점과 그 금전적 이익의 크기가 사망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리를 극한으로 주장할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모두 비윤리적 내지 비도덕적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특히 사망보험자의 경우도 수익률이 피보험자의 사망 시기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사망보험계약의 매수인과 그 구조만 다를 뿐 동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후 가능하면 오랫동안 생존하여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보험계약은 윤리적인 반면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제도는 비윤리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정당화 될 수 없다.<sup>44)</sup> 나아가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조기에 발생할수록 소위 ‘웃는 상속인’이라고 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패륜적 상속인 등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보험계약 자체를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 자체를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행위로 볼 근거는

41) 다만 국내의 선행연구결과는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 도입에 대한 장애로서 위 제도의 비윤리성 내지 반도덕성에 대해 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비윤리적이라거나 반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42) 박윤직 대표편집(1992a), pp. 217-220.

43) 박윤직 대표편집(1992a), p. 218.

44) 같은 취지, 김이수(2012), pp. 616-617.

없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수익률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기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기에 대한 타인의 인위적 관여의 개연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도입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제3자의 인위적 관여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와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증가의 문제

생각건대,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 쟁점 중의 하나는,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률 내지 사망 시기가 제3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될 소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위 문제에 대해서는 Life settlement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유력한 국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Viatical settlement의 운영과정에서 투자자 등 제3자에 의한 피보험자 살해 등의 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sup>45)</sup> 미국의 사례를 견주어 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등 제3자에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조기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든가 또는 이로 인해 보험자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력한 견해는, 상법 제731조에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제1항),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당해 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 외의 사람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제2항)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동 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양수인 등에 의한 피보험자의 살해 등의 도덕적 위험의 증가를 큰 문제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sup>46)</sup>

45) 권영수·이형철(2006), p. 17.

46) 김이수(2012), pp. 617-620.

#### 다.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및 인격권 침해의 문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어떤 유형의 전매에 있어서도 매수인 등의 수익률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과 실제여명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sup>47)</sup> 따라서 전매대상인 사망보험계약의 전매금액의 확정 및 투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매수인 등에 의한 피보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 추적관찰이 요구될 것이다.<sup>48)</sup> 그러나 매수인 등에 의한 피보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 및 건강상태에 대한 과도한 추적관찰의 허용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sup>49)</sup>

미국의 경우, Life Settlement Model Act 제6조 B항은 동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전매업자, 보험전매중개인, 보험회사, 기타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를 인정한 자는 피보험자의 신상 또는 재정 및 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sup>50)</sup> 피보험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sup>51)</sup>는 개인정보<sup>52)</sup>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

47) 조성일(2018), p. 285.

48) 김문재(2008), p. 227.

49) 홍지민(2019), p. 10.

50) LIFE SETTLEMENTS MODEL ACT

Section 6. Reporting Requirements and Privacy

B. Except as otherwise allowed or required by law, a viatical settlement provider, viatical settlement broker, [viatical settlement investment agent,] insurance company, insurance producer, information bureau, rating agency or company, or any other person with actual knowledge of an insured's identity, shall not disclose that identity as an insured, or the insured's financial or medical information to any other person unless the disclosure:

... (이하 생략) ...

5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는 등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주체<sup>53)</sup>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가진다.<sup>54)</sup>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및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함)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함)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02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5조 제1항).

사건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 또는 나항을 동 법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5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4)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라. 피보험자 등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한 피해 발생 및 사기의 우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본다.<sup>55)</sup> 그런데 특정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률행위 당사자 중 일방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가 있어야 하고, ②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통설적 견해와 판례에 따르면, 궁박이란 급박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sup>56)</sup> 나아가 경솔이란 특정한 행위를하기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일반인이 기울이는 주의를 결여한 심적상태를 의미하고,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sup>57)</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과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하면,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시달리는 노령층 피보험자 등에 의한 현저히 불공정한 사

55) 박윤직 대표판집(1992a), pp. 241-24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76201 판결.

56) 박윤직 대표판집(1992a), p. 24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고로 판례는 단순한 생활고에 처해 있는 경우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 판결), 동거가족의 치료비 및 학자금에 필요한 경우(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 판결;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다88 판결 등), 농촌에서 농사만을 짓던 가족이 사고로 가장을 잃어 경제적·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경우(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457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824 판결 등)에 궁박한 상태를 인정하고 있다.

57)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76201 판결 등.

망보험계약의 매도라고 할 것이다.<sup>58)</sup> 일부 견해는 사망보험계약의 전매를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 문제로 파악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 매도인인 보험계약자의 공박, 경솔 등으로 인해 민법 제104조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양도가 무효가 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sup>59)</sup> 그러나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등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를 공박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sup>60)</sup>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전술한 민법 제104조의 세 가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요구한다.<sup>61)</sup>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감안하면,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와 관련한 노령층 피보험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민법 제104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은 별도의 정책적 보호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sup>62)</sup>

한편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04조에 따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공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sup>63)</sup> 경험 없는 자를 속여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는 민법 제110조의 요건을 증명하여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sup>64)</sup> 즉 법률행위의 일방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공박 등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적용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 가능하거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정부는 보험사기를 근

58) 이러한 문제는 비단 노령층 피보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 중증질환자 등 급격한 경제적 곤란에 직면한 자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59) 김선정(2008), p. 267.

60)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704 판결;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6다2179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61)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135 판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65 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867 판결.

62) 김문재(2008), p. 227.

6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64) 박윤직 대표편집(1992a), pp. 599-600;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 157 판결(이 판결은 민법 제103조의 적용에 관한 것이지만, 민법 제104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할 것이다).

절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보험사기<sup>65)</sup>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sup>66)</sup> 특히 금융감독원의 최근 10년간 보험사기 관련 사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자는 평범한 가정의 50대 이상 고령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67)</sup>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문제될 소지가 크다.<sup>68)</sup> 특히 고령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사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 대책이 철실히 요구될 것이다.<sup>69)</sup>

### 3. 대안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간과하기 어려운 사실적·법리적 과제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위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다.<sup>70)</sup> 특히 위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유력한 견해는 우리에게 낯선 제도의 직접적인 도입보다는 현행 보험법제 내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견해는 경청할 가치가 충분하므로 이하에서는 우리 법제 내에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대체할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방안이 피보험자 등의 경제적 수요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려고 한다.

65) 다만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동 법 제2조 제1호), 사망보험계약 전매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전매업자 등이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66) 금융감독원이 2022. 4. 12.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8,986억 원) 대비 5.0%(448억 원) 증가하였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4. 22),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참조.

67) 농협신문(2022. 9. 2), “보험사기, 50대 이상 평범한 가정이 많이 당했다”,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FNC/362217/view>) 참조.

68) 김문재(2008), pp. 227-228.

69) 김은경(2017), p. 72.

70)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 견해로는, 장덕조(2014), pp. 141-143 참조.

### 가. 해지환급금제도의 활용가능성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49조 제1항 본문),<sup>71)</sup> 이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절한 금액(보험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동 법 제736조 제1항 본문). 상법 제736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반환할 금액의 범위 내지 대상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sup>72)</sup>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계약의 해지 시에 일정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지환급금’이라고 칭한다.<sup>73)</sup>

유리한 견해는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해지환급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74)</sup> 그런데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보험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계상하는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는데,<sup>75)</sup>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총 납입보험료(혹은 총 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평가액)에서 해지공제액이나 보험모집경비, 보험의에 대한 급여, 보험증권 발행수수료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각종 운영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을 환급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sup>76)</sup>

한편 사망보험계약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전매가격이 해지환급금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

71) 다만 이 경우에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

72)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박세민(2021), pp. 871-872면; 한기정(2018), pp. 785-786 각 참조.

73) 보험연구원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 내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견해는 경기부진, 가계경제악화 및 가계부채의 급증을 그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임태준(2015), p. 2 참조.

74) 장덕조(2014), p. 142.

75)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76) 김이수(2012), pp. 611-612; 임태준(2015), p. 9; 홍지민(2019), pp. 35-36; 정진옥(2001), pp. 501-503.

에는, 피보험자 등은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전매 대신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사망보험계약 전매가격은 해지환급금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sup>77)</sup>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보험료지급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유상·쌍무계약이라는 것이 통설적 견해와 판례의 태도이긴 하지만, 개별 보험계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에는 등가성의 원칙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sup>78)</sup> 즉 개별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총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의 특성상 사망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총 보험료의 합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으로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가능한 보험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지환급금은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대체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 나. 보험계약대출 등의 활용가능성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3조는 ‘보험계약대출’이라는 표제하에 일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sup>79)</sup>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대체수단으로서 위 제도의 가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sup>80)</sup> 그러나 위 표준약관 제33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금액을 해지환급금의 한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sup>81)</sup> 앞서 살

77) 김이수(2012), p. 607.

78) 박세민(2021), pp. 111-112.

79)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80) 장덕조(2014), pp. 141-142 및 김은경(2017), p. 71도 보험료담보대출을 피보험자의 노후자금이나 복지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1) 참고로, 교보생명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50%~95%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하고 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 <보험계약대출-교보생명

퍼본 보험계약의 임의해지를 원인으로 한 해지환급금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대출금액 자체가 보험금에 비해 매우 소액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sup>82)</sup> 또한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것으로서,<sup>83)</sup>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sup>84)</sup> 특히 생명보험자들의 보험계약대출 실무상 대출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험수익률에 원가요소와 이윤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가한 수준에서 결정되는데,<sup>85)</sup> 요즘과 같은 금리상승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sup>86)</sup>

미국의 경우 Viatical settlement 또는 Life settlement의 도입에 따른 보험금지급액의 증가 및 보험료상승 압박에 직면한 보험자들은 자구책으로서 ‘해지환급금 초과계약대출(Extra-Contractual Loan)’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sup>87)</sup>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대출한도가 해지환급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대출금액의 측면에서 Life settlement의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대출계약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ife settlement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sup>88)</sup>

한편 일부 견해는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Accelerated Death Benefit, 이하, ‘ADB’라 함)”을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sup>89)</sup> 미국의 경우, ADB는 일

(kyobo.com)》 참조. 2022. 9. 30. 최후검색.

82) 최경진·신동진·성주호(2021), p. 44.

83)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데, 다수의 견해는 보험자가 보험금·해지환급금 등 약관상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출원리금을 상계한 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특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파악하는데 반해, 판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판결)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본다.

84)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85) 교보생명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참조.

86) 최경진·신동진·성주호(2021), p. 44.

87) 홍지민(2019), p. 28. 다만 필자의 관련 검색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도 보험자들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적립금(the accumulated cash value) 상당액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고, 대출이 실행될 경우에도 2021년 기준으로 보통 5% 내지 8%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The Investopedia team,(2021),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121914/understanding-life-insurance-loans.asp>) 참조. 2022. 9. 30. 최후검색.

88) 홍지민(2019), p. 28.

반적으로 치명적 질병으로 인해 기대여명이 2년 이하인 말기환자의 경우에 사망보험금의 25~100%를 선지급하였으나,<sup>90)</sup> 이후에는 만성질환자 또는 장기요양(Long Term Care)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sup>91)</sup> 국내에는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 제도는 종신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의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망 이전에도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험상품이다.<sup>92)</sup> 사망보험금 선지급이 가능한 보험상품은 사망보장은 유지하면서도 생활비·연금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노후자금에 필요한 중년층 이상의 관심을 끌고 있다.<sup>93)</sup> 그런데 국내 생명보험자들의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부분의 보험자들은 사망보험금 선지급 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내지 12개월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94)</sup> 둘째, 피보험자 등이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대비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점이다. 국내 대부분의 보험자들은 선지급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액의 50%, 최고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sup>95)</sup> 이는 보험금의 선지급이 말기환자의 치료비 등의 용도에는 적합할 수 있어도, 생활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대한 활용방안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자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생명보험자들에게

89) 장덕조(2014), p. 142.

90) Julia Kagan(2022),

([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ccelerated\\_death\\_benefit.asp](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ccelerated_death_benefit.asp)), 2022. 10. 4. 최후검색.

91) 홍지민(2019), p. 27.

9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6. 18), “현재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제재하고 있으며,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6. 17. 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93) 한국경제신문(2016. 8. 19), “사망보험금 당겨쓰는 ‘선지급 보험’ 인기”,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81967401>) 참조.

94) 대표적으로 우체국종신보험약관 제37조, 라이나 선지급서비스특약 제7조, KDB생명 선지급서비스특약 제1조 등 참조.

95) 우체국종신보험약관 제37조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60%, 라이나 선지급서비스특약 제7조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50% 및 1억 원 한도, KDB생명 선지급서비스특약 제2조의 경우 사망보험금액의 50%, 이내에서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메트라이프생명 보험이나 DB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은퇴시점 전후로 부족한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이 가능한 상품개발을 독려한 바 있다.<sup>96)</sup>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상품의 경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 받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동일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연금상품과 비교하여 연금수령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다.<sup>97)</sup> 특히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액의 일부를 노후소득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노후소득 선지급금의 재원을 사망보험금액의 일부를 매년 자동감액한 후 해당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으로 한다는 점에서<sup>98)</sup> 앞서 본 해지환급금에 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다. 소결론

지금까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해지환급금제도·보험계약대출제도 및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사망보험계약의 임의해지를 원인으로 한 해지환급금제도 및 보험계약대출제도는 그 재원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노후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상품으로서, 피보험자 등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기능이 추가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보험자들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은 선지급금액의 제한과 선지급 요건의 엄격성 등으로 인해 시한부 말기환자의 의료비 수요에는 대응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을지 몰라도, 노령층 피보험자 등의 생활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국내 종신보험 상품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의 사망보험금 지급 일변도에서 벗어나, 피보험자의 형편과 상황에 대응하는 계약자 주문 형태의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sup>99)</sup> 이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확대와 수요자 편익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00)</sup>

96) 김석영·김세영·이선주(2018), p. 76.

97) 최경진·신동진·성주호(2021), p. 76.

98) 푸르덴셜생명보험, 「무배당 변액종신보험 약속」 안내장 참조.

99) 김석영·김세영·이선주(2018), p. 79.

100) 홍지민(2019), pp. 27-28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와외의 경쟁관계



## Ⅳ. 현행 법제하에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 방안

### 1. 전제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법적 성질은 보험계약상 지위의 이전과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망보험계약의 전매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인수의 요건 및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상법 제731조 및 제733조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험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이전에 관한 논의와 함께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내지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살펴본다.

### 2. 계약당사자 지위의 이전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는, 기존의 보험계약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양수인이 새로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계약인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sup>101)</sup> 판례는 계약인수의 요건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3면 계약에 의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전합의에 대한 잔류당사자의 승인 또는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sup>102)</sup>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양도인과 양수인 및 보험자의 합의 또는 보험계약전매에 대한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관해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의 변경에 대해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변경은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 변경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잔류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다.<sup>103)</sup> 다만, 당사자의 변경이 계약의 이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무의 내용이 노무의 제공 등과 같은 소위 「부대체적 하는 급부」의 경우에 특정직일 뿐, 금전지급채무 등과

의 정립에 따라 생명보험자들은 대응책으로서 ADB의 제공·해지환급금 초과 약관대출의 도입·연금전환 특약이 포함된 상품 등을 출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한다.

101) 김이수(2012), p. 626; 장덕조(2014), p. 132 이하 참조.

102)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 32534 판결 등.

103) 박윤직 대표편집(1992b), p. 628.

같은 「대체적 주는 급부」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변경이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체적 주는 급부」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변경에 대한 잔류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부대체적 하는 급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의 가장 주된 채무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료지급채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은 위와 같은 주된 채무 외에도 보험료 반환의무(제649조)·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유지의무(제625조, 제653조 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들은 계약체결 후에 당사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다.<sup>104)</sup> 이에 대해 유력한 견해는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유지 및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각종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해 승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sup>105)</sup> 위 견해는 경청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사망보험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일반론적 우려를 표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위 견해에 따르면 모든 보험계약당사자의 변경에는 반드시 보험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요구될 것이다.<sup>106)</sup> 그러나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보험금지급시기의 인위적 조정의 위험이 없는 이상 계약자변경에 대해 자의적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의 논제인 노령층의 생활자금 확보의 수단으로서의 사망보험계약 전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노령층이 상속 등의 목적으로 가입한 자기의 사망보험계약 내지 상속인 등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자의 승낙권의 무차별적 인정은 문제가 있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자기의 보험계약이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재산권으로서

104) 김문재(2008), p. 222; 김선정(2008), p. 265.

105) 장덕조(2014), pp. 133-134.

106) 다만 위 견해도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자유로운 승낙권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자의 변경으로 인해 급부 내용의 실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장덕조(2014), p. 134 참조.

의 성질이 한층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권의 무차별적 행사의 허용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sup>107)</sup>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변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권을 규정한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0조는 보험계약자변경으로 인한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 등 도덕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지급채무불이행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3. 보험수익자의 변경의 문제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에 따라 양수인은 기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 받게 되므로, 사망보험계약의 전매를 위해서는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만,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전에 장래에 보험수익자가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장래에 발생할 보험금청구권의 이전을 의미한다.<sup>108)</sup> 다수의 견해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사법(私法)상의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자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sup>109)</sup> 문제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진다(상법 제733조 제1항).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구체적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

107)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며(憲裁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9-310; 2000. 6. 1. 98헌바34, 판례집 12-1), 헌법상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사인 간의 계약 또는 비계약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장영철(2009), p. 53) 재산권 보호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08) 장덕조(2014), p. 130; 김이수(2012), p. 618, 622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이라고 칭한다.

109) 박세민(2021), p. 911; 한기정(2018), p. 762.

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계약의 매수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보험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sup>110)</sup>

둘째,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타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자기의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이 유보되어 있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미확정상태로서, 보험사고(피보험자의 사망)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의 양수인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반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유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장래의 보험금청구권은 확정이 되므로,<sup>111)</sup> 보험계약자는 임의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이미 확정된 보험수익자 외의 제3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기존 보험수익자, 새로이 지정될 보험수익자의 3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기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새로이 지정될 보험수익자 사이의 합의를 승인하는 방식 등이 요구될 것이다.<sup>112)</sup>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성권으로 이해하는 통설적 견해에 따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에 보험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상법 제731조 제2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자기의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sup>113)</sup>

셋째, 상법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내지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 상법의 해석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sup>114)</sup> 그러나 이

110) 박세민(2021), p. 1003; 한기정(2018), p. 763.

111) 박세민(2021), pp. 997-998; 한기정(2018), p. 761.

112) 양승규(2004), p. 459.

113) 박세민(2021), p. 971.

114) 김성태(2001), pp. 837-838.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내지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양도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만 있으면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는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내지 보험수익자 변경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그리고 양수인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4. 소결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이전과 함께 보험금청구권자인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동반된 법률행위로서, 현행법상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및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지위이전과 관련해서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0조는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으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보험계약자 지위변경에 대한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0조는 계약자변경으로 인한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 등 도덕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계약자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지급채무불이행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보험자의 동의요건에 대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이지만,<sup>115)</sup>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0조의 개정 내지 삭제가 없는 한 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계약당사자 지위의 이전은 새로운 법적 분쟁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해, 보험실무상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내지 보험금청구권 양도의 문제는 구체적 사망보험계약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그 요건과 결론이 달라질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망보험계약의 대종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상법의 해석상 피보험

115) 김이수(2012), p. 623.

자의 서면동의를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소멸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내지 보험수익자의 변경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도 필요할 것이다.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상법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양도 내지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를 피보험자의 보호 및 공서양속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sup>116)</sup>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보험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사망보험계약의 전매를 위해서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제하에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 등 보험계약의 전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전부의 동의가 없는 한 사망보험계약의 전매는 분쟁발생 소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빠진 보험계약자 등을 이용한 사기 등의 피해 발생 우려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난제들을 감안하더라도,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령층 인구의 빈곤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층 빈곤 문제를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의 경우,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령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는 그 안정성 및 공공성 등으로 인해 노령층 주택보유자의 금융수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되므로,<sup>117)</sup>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이 글의 결론 및 입법론으로서 국가 내지 공공기관에 의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16) 한기정(2018), p. 748;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판결.

117) 김성아·이태진·최준영(2021), p. 127.

## V. 결론 및 입법론적 제언

### 1. 주택연금제도의 의의와 장단점

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2007년경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이하, '주택연금'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라 함은 위 제도를 의미한다.<sup>118)</sup> 주택금융공사법 제8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하고, 금융기관이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라 한다(법 제8조의3). 즉,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연령(현재는 만 55세) 이상의 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별도의 계정으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주택을 활용하여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보증을 통해 가입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많은 월지급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노후 생활자금의 확보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119)</sup> 그러나 주택연금의 위와 같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므로, 요즘과 같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연금가입자의 수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적자와 함께 연금운영을 장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120)</sup> 나이가 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목적물인 주택의 가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피담보채권액을 최소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월 연금지급액이 과소하여 실질적인

118) 김선량(2020), p. 76.

119) 김선주(2020), p. 10.

120) 김선주(2020), p. 10.

노후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 2. 주택연금제도의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에의 시사점

현행 법제상 주택연금제도는 공사가 직접 주택소유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소유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주택소유자에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가지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상황에 대해 공사가 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제도는 주택가격의 하락·금리의 변동·채무자 수명연장 등에 의해 연금대출 잔액이 담보목적물인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지급 가능한 보험금액의 현가(現價)의 산정에 있어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치변동의 위험은 있겠지만, 사망보험계약은 정액보험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가치변동의 위험은 주택연금에 비해 안정적이다. 또한 피보험자 등의 장수로 인한 문제 역시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통계학적 분석에 기반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의 기대수명을 감안한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와 보험금액이 설정되므로, 피보험자의 수명연장으로 인한 위험은 보험단체의 설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이 된 것이다. 주택연금제도에 대비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위와 같은 장점들을 고려하면, 사망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을 담보로 한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은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다.

## 3. 운영방식에 대한 고찰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도입 및 운영방식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 논할 수는 없지만, 사망보험계약의 전매 시에 매도인인 보험계약자가 수령할 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해 약간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망보험계약의 전매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서, 기존의 보험수익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가지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 이전에는 보험수



익자는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을 가지지만,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소멸되어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사망보험계약의 전매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 전매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Life settlement나 국내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는 제3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거액의 대금을 노린 사기 등의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조기에 소진해 버릴 경우 노령층의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망보험계약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현행 주택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법정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매월 연금형식으로 일정한 금원을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수령을 하고, 대출 금융기관이 가지는 대출금채권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 주는 방안인 가칭 '사망보험계약 연금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남은 보험금 잔액은 보험수익자 내지 상속인이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수익자 등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참고문헌

곽윤직 대표편집 (1992a), **민법주해 (2)**, 박영사.

(Translated in English) Editorial Chief, Kwak, Y. (1992a). *Annotation of Civil Code 2*, Pak-Young-Sa.

\_\_\_\_\_ (1992b), **민법주해 (10)**, 박영사.

(Translated in English) Editorial Chief, Kwak, Y. (1992b). *Annotation of Civil Code 10*, Pak-Young-Sa.

권영수·이형철 (2006), “미국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운영현황 및 국내 도입시 고려사항”, **조사연구 Review**, 제18호, 금융감독원.

(Translated in English) Kwon, Y. and H. Lee (2006). “The operation status of the U.S. life settlement and considerations when introducing it in Korea”, *Review*, 18,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김문재 (2008), “생명보험계약의 전매에 대한 국내법적 수용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호, 통권 제37호, 한국기업법학회.

(Translated in English) Kim, M. (2008). “A Study on the Admission and its Limitations of the Viatical Settlement in Korea”, *Business Law Review*, 23(2), Business Law Association.

김선량 (2020),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그 활성화 방안”, **부동산법학**, 제24집 제1호, 한국부동산학회.

(Translated in English) Kim, S. (2020). “A Study on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nd Activation Plan”, *Real Estate Law Review*, 24(1), KOREA ASSOCIATION OF REAL ESTATE LAW.

김선정 (2008), “보험계약자 변경”,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Translated in English) Kim, S. (2018). “Verification of the Insurance Policyholder - focused on the debate since Tokyo High Court

2006.3.22. Decision-”, *Commercial Cases Review*, 21(4), The Korea Commercial Cases Association.

김선주 (2020), “고령자 주택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부동산법학**, 제24집 제1호, 한국부동산학회.

(Translated in English) Kim, S. (2020). “Utilizing Elderly Housing Asset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Activating Housing Pension”, *Real Estate Law Review*, 24(1), KOREA ASSOCIATION OF REAL ESTATE LAW.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 **보험상품의 변천과 개발 방향: 생명보험 상품 중심**, 연구보고서, 2018-5, 보험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im, S., S. Kim and S. Lee (2018).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surance Products in Korea*, Research Paper, 2018-5,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김성아·이태진·최준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효과**, 연구보고서(수시), 2021-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im, S., T. Lee and J. Choi (2021). *The Effect of the Home Pension on Poverty Reduction*, Research Monograph, 2021-0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김성태 (2001), **보험법강론**, 법문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S. (2001). *Insurance Law*, Bob-Mun-Sa.

김안나 (2021), “기초연금의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감소 효과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한국융합학회.

(Translated in English) Kim, A. (2021). “Poverty Reduction in Elderly Household Types: The Impact of Basic Pens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 Korea Convergence Society.

김은경 (2017), “보험증권의 채권화 가능성과 유가증권성 문제”, **보험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Translated in English) Kim, E. (2017). “A Study on Insurance Policy’s

- Securitization Possibility and Securities”, *Korea Insurance Law Journal*, 11(1), Korea Insurance Law Association.
- 김이수 (2012), “우리 법상 생명보험 매매의 필요성 및 양도방식의 적절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Translated in English) Kim, I. (2012). “Need for Life Insurance Policy Sale and Adequate Legal Scheme in Korea”,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13(3),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
- 박세민 (2021), **보험법**, 제6판, 박영사.
- (Translated in English) Park, S. (2021). *Insurance Law*, 6<sup>th</sup> ed., Pak-Young-Sa.
- 생명보험협회 (2021),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 (Translated in English)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2021). “The 16<sup>th</sup> Life insurance propensity survey”.
- 양승규 (2004), **보험법**, 제5판, 삼지원.
- (Translated in English) Yang, S. (2004). *Insurance Law*, 5<sup>th</sup> ed., Sam-Ji-Won.
- 임태준 (2015),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통권 제365호, 보험연구원.
- (Translated in English) Lim, T. (2015).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Household Debt and Termination Refund Payment in Korea”, *KIRI Weekly*, 365,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장덕조 (2014), “생명보험전매제도의 체계적 연구와 입법론적 수용가능성”, **금융법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 (Translated in English) Jang, D. (2014). “Study on Viatical Settlements and the Possibility of Legislation”,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Law*, 11(3),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 장영철 (2009), “기본권의 제3자적(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 (Translated in English) Chang, Y. (2009). “Eine Studie von

Drittwirkungslehren der Grundrechte”, *Public Law*, 37(3),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정진옥 (2001), “해지환급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8집, 한국기업법학회.

(Translated in English) Jeong, J. (2001). “Eine Studie über den Anspruch auf den Rückkaufswert”, *Business Law Review*, 8, Business Law Association.

조성일 (2018), “생명보험계약 증권화에 관한 법적 소고”,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Translated in English) Cho, S. (2018). “A Legal Study on the Securitization of Life Insurance”,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19(2),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최경진·신동건·성주호 (2021), “사망보험금 역모기지를 통한 노후소득 개선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Translated in English) Choi, K., D. Shin and J. Sung (2021). “A Study on Improving Old-age Income through Death Benefit Backed Reverse Mortgage System”, *The Journal of Risk Management*, 32(2), Korea Risk Management Society.

한기정 (2018), **보험법**, 제2판, 박영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K. (2018). *Insurance Law*, 2<sup>nd</sup> ed., Pak-Young-Sa.

홍지민 (2019),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9-6, 보험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Hong, J. (2019). *Study on Life Settlement*, Research Paper, 2019-6,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교보생명(kyobo.com)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20307098400501>)

통계청, 한 눈에 알아보는 나라지표(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

nt.do?idx\_cd=1024&board\_cd=INDX\_001)

한국경제신문(<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81967401>)

Julia K. (2022). “What Are Accelerated Death Benefits?”, June,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ccelerated\\_death\\_benefit.asp](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ccelerated_death_benefit.asp)).

Life Insurance Settlement Association (2020). “What is A Life Settlement?”,  
Aug. 28, LISA Consumer Blog.

Stephen T. (2014). “Sell Half, Keep Half -- Newest Life Settlement Option”,  
Aug. 29, Wealth Management.com.

The Investopedia team (2021). “Understanding Life Insurance Loans”, Aug,  
Investopedia(<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121914/understanding-life-insurance-loans.asp>).

## Abstract

In Korea, the main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ife settlement for death insurance contracts are the moral risk and ethical problems inherent to the life settlement, as well as the increase in death risks of the insured. Life settlement contains the problem of fraud that exploits the policyholder's desperate circumstances etc. However, despit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concerns, pover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is a problem that cannot be neglected any longer. Therefore,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 death insurance contract pension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guarantee the debts that the policyholder borrows in the form of annuit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the death benefits as collateral.

※ Key words: Life insurance, Viatical settlement contract, Life settlement contract, Insurance Cash Value, Insurance Contractual Loan, Accelerated Death Benefit, Cash surrender value

